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2
----------	-----

제출년월일 : 2000. 03. 21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자 및 대규모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의무 폐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기간 조정

7일 이내 → 15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안 제4조제2항)

나.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안 별지 1)

3. 참고사항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
- 지방세법제27조제3항(가산금 및 독촉장)

4. 입법예고 : 필요(특기할 사항 없음)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5조“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근거 법령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50	100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50	100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50	1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생략)</p> <p>②과태료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p>	<p>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 15일 이내에</p> <p>-----</p> <p>-----.</p>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근거법령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근거법령	부과대상	부과대상(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 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1.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0	30	50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1.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0	50	100
	2.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2.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20	50	100
	3.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0	30	50		3. 삭제			
	4. 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0	20	30		4. 삭제			
					〈신 설〉 5.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20	50	100	